

## ‘불온 통신’의 계보와 ‘트위터’ 박정근 사건에 대한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홍남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2002년 6월 27일 ‘불온통신’ 규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불온통신’ 규제가 용어상으로는 사라졌다 해도 ‘불온’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불온’은 ‘안보’와 ‘풍속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온, 한국 근현대사를 꿰뚫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마련된 검열 제도를 비롯하여 미군정기, 박정희 정권의 유신 집권기 등을 거쳐 민주화 이후 보수 정권의 집권이 이어진 지난 몇 년간 ‘불온’의 의미는 집권 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규정, 활용되면서 다양한 지점에서 증폭, 변형되어 왔다. 이 연구는 북한 관련 게시글이나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은 박정근 사건에 대한 판결문 및 신문 기사를 통해 ‘불온’과 관련하여 뉴미디어인 트위터의 매체적 특성이 어떻게 규정되어 가는지, 증폭 담론과 정부 비판적 활동, 사회 참여 활동 등과의 연관성 속에서 박정근이 어떻게 ‘불온한 존재’로 규정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불온’이 어떻게 규정되어가며,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불온’의 계보학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KEYWORDS** 트위터, 국가보안법, 불온통신, 불온, 검열

\* 이 글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분을 바탕으로 대폭 보완, 수정, 재구성한 결과물입니다.

\*\* namheehong777@gmail.com

## 1. 들어가며

‘불온’(不穩)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불온’은 첫째 온당하지 않음, 둘째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음의 의미를 갖는다. ‘불온 단체’ 혹은 ‘불온 대자보’와 같은 식으로 쓰인다.<sup>1)</sup> 첫째 의미에서 ‘온당하지 않다’는 것은 ‘온당한 것’, 즉 ‘정상적’이거나 ‘적절한’ 것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미다. 둘째 의미에서는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사상이나 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온’은 누가 결정하는가. 여기서 ‘불온’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사유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임유경(2015, 2쪽)은 ‘불온’의 개념이 식민과 분단을 겪은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천과 정교·제 양상의 측면을 적확하고도 풍부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유용한 핵심어(keyword)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불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sup>2)</sup> 그의 지적대로 식민과 분단, 냉전기의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한 한국의 역사에서 ‘불온’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통치 권력의 역사’를 지칭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항 권력의 역사’, 즉 ‘주체화의 경험’을 함께 촉발시켰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정한 행위, 인물, 사상 등이 ‘불온’으로 규정되는 과정과 그에 대항하는 다양한 우회적 행위, 대항 담론 등은 언어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듯이 ‘불온’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자 복잡한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게 한다.

이 글이 ‘불온’의 의미를 탐색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불온’이 우리의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의 현재에 각인되어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문제 삼으려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불온’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고 능동적 참여와 자유를 증진시키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뉴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생겨나는 상황에도 ‘불온’은 새로운 매체에서 또 다시, 그러나 낡은 방식으로 규정되

1) 국립국어원 제공 국어사전 ‘불온’.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8120200>

2) 임유경(2015)은 근대 이후 ‘불온’은 상태나 사상, 행위, 주체, 매체 등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어왔다고 지적하며 ‘불온’ 개념의 역사와 ‘불온’ 관련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정리하고 역사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불온’을 제안한다. 그는 2013년 <1960년대 ‘불온’의 문화 정치와 문화의 불화>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을 통해서 1960년대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온 생산 체제’의 확립이 본격화되어 가던 시기라고 규정하고, ‘청백사건’과 ‘분지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들이 특정 주체와 매체, 텍스트가 불온하다고 규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온의 의미 구성 과정에 개입하려 했던 주체들의 상이한 움직임을 포괄하게 해주는 대표적 ‘불온 사건’이자 ‘청년지식인’과 ‘빈민대중’의 존재론을 논의하게 하는 계기적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고, 특정한 대상을 새로운 공간 바깥으로 밀어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연구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 규제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를 위헌으로 결정하여 ‘불온통신’ 규제가 용어상으로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불온통신’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박정근 사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뉴미디어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 관련 발언을 하거나 북한 관련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등으로 북한 정권을 풍자, 조롱했던 사진사 박정근에게 ‘불온’의 죄를 규정하기 위해 권력의 담론이 어떠한 과정으로 무엇을 생산해 냈는지, 그것은 어떤 효과와 저항담론을 생산해 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불온통신 규제가 위헌결정으로 용어상으로는 사라졌다 해도 ‘불온’은 “사어(死語)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용어로 여전히 권력의 중요한 통치 기제 중 하나이기 때문”(임유경, 2015, 1쪽)에, 이 연구는 ‘불온’을 규제해온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뉴미디어인 트위터가 ‘불온’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불온’한 것을 사회 내에서 ‘금지’, ‘억압’, ‘배제’하려는 권력의 시도와 노력이 해당 발언을 무조건적으로 침묵시킨다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버틀러(Butler, 1998/2016, 246~247쪽)는 “그 용어를 금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자신의 증식-법 담론의 의도치 않은 수사적(rhetoric) 결과”를 낳으며, 특정한 대상의 금지를 위해 “자신이 금지하고자 하는 언어행위를 고안해내며, 자기 스스로 구성한 순환적이고 상상적인 생산에 휘말리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검열의 메커니즘은 “주체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발언 가능한 담론, 즉 공적 담론 내에서 무엇이 승인될 수 있으며 무엇이 승인될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한도를 한정하는 데 관여”한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발화나 침묵을 표현의 자유와 대립시킬 수 없다는 것은 침묵이 깨어진다는 것이 곧 권력에 의해 총체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부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Brown, 1998; Butler, 1998).

이러한 논의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권력 작동 방식 중 하나인 ‘불온’이 ‘사회를 보호’하려는 권력의 의도에 의해 끊임없이 재규정, 재해석, 변형, 증폭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시대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정치적 발언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이 존재하고, 북한 관련 발언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뉴미디어 시대 모든 개인이 발언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구’를 다루기 위한 통치의 기제로서 ‘불온’은 여전히 중요한 권력의 검열 방식이다. 국방부가 〈나는 꿈수다〉, 〈애국 전선〉 등을 ‘종북 앱’으로 지정했듯이(프레시안, 2012, 2, 9), 뉴미디어 시대에도 ‘불온’은 끊임없는 자기규정을 반복한다.<sup>3)</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자기규정의 이유는 이 용어가 노골적이어서는 안 되는,

구시대적인 용어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1년 ‘불온서적’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에 반입이 금지되던 ‘열독불허 도서목록’이 폐기되었는가 하면(한국일보, 2002, 11, 27), 2008년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 23권은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량이 오히려 급증하기도 하였다(한겨레, 2008, 10, 25). 또 국방부가 ‘불온서적’의 명칭을 ‘장병 정신 교육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기사(매일경제, 2008, 8, 1)에서 보듯이 ‘불온’은 그 자체로 저항을 유발하는 민감한 용어이기도 하다.<sup>4)</sup>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 시대에 ‘불온’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이 연구는 2011년 한국사회에서 발생했던 ‘박정근 사건’에 대한 검찰 및 1심 재판부의 담론과 이에 대한 저항담론으로 형성된 진보신문의 담론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뉴미디어가 ‘불온’이라는 낯은 개념과 어떻게 엮이는지, 뉴미디어를 통해 ‘불온’의 계보학을 구성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불온통신’ 규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뉴미디어 시대에 ‘불온’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문학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어왔던 ‘불온’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고, 둘째로는 불온통신 규제의 제도적·내용적 역사를 살펴며 불온통신 규제의 계보학에 이 연구를 위치시키고자 하며, 셋째로는 박정근 사건에 대한 법 담론과 미디어 담론을 분석하여 뉴미디어인 트위터가 어떻게 ‘불온’과 연결되는지, 박정근은 어떻게 ‘불온한 존재’로 구성되어가는지 살펴보려 한다.

3) 2008년 보수 정권의 집권 이후 노골화된 언론, 문화, 예술에서의 검열 논란과 탄압, 문화예술가 및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 주도의 역사 교과서추진, 정부 비판적 발언에 대한 ‘관리’, 공안 사건 및 중복 담론 증가 등은 다양한 반정부 비판 활동(가)들을 좌파, 중북 등의 ‘불온’으로 배제해온 한국의 근현대사를 상기시킨다. 또한 ‘불온’이 배제/포섭을 통해 통치 권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국가 만들기 과정”(Butler, 1998, p.251)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4) 그러나 ‘국가안보’는 여전히 법 담론에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군법무관 7인이 국방부의 군대 내 불온서적 반입 및 소지를 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2008.10.22)하였으나,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불온도서 소지 등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제16조2에 대해 합헌결정하였고, 이 규율의 근거법률인 군인사법 제47조의2와 이 규율에 의해 내려진 ‘군대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김나정·이승은·이정준·최지원, 2011). 「국가보안법」 또한 국제 인권단체 등에서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효한 법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의 130권의 서적이 ‘불온서적’이라며 이를 운영하는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판 ‘2017년 불온서적 목록’에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존 리드의 <세계를 뒤흔든 10일>, 마르크스의 <독일 이데올로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경향신문, 2017, 1, 8).

## 2. ‘불온’의 의미와 불온통신 규제의 역사

### 1) ‘불온’의 의미와 내용

‘불온’이란 무엇인가. ‘불온’은 주로 국문학 분야에서 검열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되어 왔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시기에서부터 분단 및 권위주의 정권 시기 등 억압적인 국가 권력을 경험해 온 한국 사회에서 ‘불온’은 주로 통치권력에 의해 ‘위험한 것’으로 규정된 것에 붙여지는 이름이었다. ‘불온’에 대한 국내 문헌들을 살펴보면 ‘불온’은 식민지 시기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통제에서부터 시작하여(검열연구회, 2011; 구장률, 2009; 이상경, 2009; 이준식, 2009; 이화진, 2009; 채호석, 2009; 한기형, 2010a; 2010b; 한만수, 2015) 영화, 신문, 잡지, 강연회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가고 있으며(브라이언 이시즈, 2009; 송민호, 2009; 송민호, 2014; 이준식, 2009; 이화진, 2009) 점차 대중의 삶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 유언비어 유포, 불온 문서나 낙서(변은진, 2011, 2012; 정병욱, 2013)에 대한 통제 문제로 확장되어간다. 국문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왔던 검열 관련 연구의 한 축이 식민지 시기라면 다른 한 축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한 공안 사건의 맥락과 검열, 불온의 의미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다(오제연, 2014; 유승진, 2015; 이봉범, 2011; 임유경, 2015). 또 한 축에서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검열 및 공안 관련 법과의 관계에서 ‘불온’의 의미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일상사’ 연구의 일환에서 불온이 풍기문란, 성(性)적인 것 등 대중의 일상적인 삶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밝히려는 연구 경향을 보인다.<sup>5)</sup>

임유경(2015, 16쪽)에 의하면 ‘불온’의 의미는 분단 이후 급격한 수축을 일으켰다. 그는 1948년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1일 공포된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의 ‘불온’의 배후로 ‘북한’이 부상하는 정치적 장면을 제공해준다고 지적한다. 국보법, 반공법을 위시하여 중앙정보부,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 병역법 등의 “‘불온’을 포획 가능한 장치(dispositif)로 편입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법제도들이 ‘내부의 적’을 발견하고 생산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것이 1960년대를 기점으로 발생한 각종 공안

5) 권명아(2013)는 ‘치안유지’와 ‘풍속통제’라는 양분화된 틀에서 불온의 개념이 사유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후자의 연구 경향에서 1930년대 무렵의 경성 풍경을 “만화경처럼” 보여주는 일상사의 연구 경향이 당시의 민중 생활을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복원하면서 비판적 맥락을 상실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억압적인 국가권력이 민중의 일상적인 삶에 일방향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며, 검열과 ‘불온’ 규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저항과 반발, 일상에서의 ‘불온’이 존재했음을 역사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의미를 갖지만, 이러한 연구 경향들이 민중의 ‘저항’을 의미화하면서 국가권력의 제도적, 억압적 차원을 축소할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온’ 및 검열 연구는 통치권력의 제도적·억압적 차원과 주체화의 차원의 역동성을 함께 ‘구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

사건들을 매개함으로써 ‘만성적인 공포’를 생산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유승진(2015, 453쪽)은 반공주의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력 관계 아래서 사회적 실천들을 조직하는 원리”이자 “예속화/주체화의 테크놀로지로 기능하는 특정한 담론적 실천들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권력관계를 재생산하는 장치(dispositif)”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인 ‘불온’이 법/제도라는 ‘장치’와 함께 ‘구체화’되어왔으며 ‘불온’ 연구 또한 그러한 구체적 ‘장치’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온’ 관련 담론의 생산과 법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전제하는 것은 분단 체제 하에서 온 국민을 ‘보균자’로 간주한다는 데에 있다(임유경, 2015, 16~17쪽). 이는 또한 대중을 수동적인 ‘전염 대상’이면서 통치 권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다. 유사한 논지에서 이상길(2003, 9쪽)은 19세기 후반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균중심리학’이 “생물학과 병리학의 성과들을 탈맥락화하여 사회현상에 확대적용”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자율권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반박하는 데에 활용되었다고 지적한다.<sup>6)</sup>

1960년대 무렵부터 시작된 다양한 공안 사건들의 맥락에서 ‘불온’은 특정한 사상을 지닌 사람들의 ‘육체’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해 온 구체적인 ‘장치’를 통한 통치의 실천 과정이다. 1960년대를 연구한 권보드래와 천정환(2012, 169쪽)에 따르면 이러한 사상범의 ‘육체’를 통한 ‘생 정치’가 ‘적군’뿐 아니라 ‘자국’의 민간인까지를 포로정책과 귀순제도, 사상전향제도 등을 통해 다루어 내부를 ‘분할통치’함으로써 ‘내치’의 동력을 마련해왔다고 말한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이 초기부터 박정희 자신의 좌파 전력과 논란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간첩’을 만들어냈고,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준)전시상태와 군사주의”가 내면화되었으며, 여기서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대간첩 작전에 동원되어 서로를 감시·고발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178~179쪽).

그런데 1960년대 이후 ‘불온’을 단순히 ‘북한’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사유하는 것은 지나치게 상황을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제연(2014, 188~200쪽)의 지적에 의하면

6) 스테판 욘손(Jonsson, 2005/2013, 116~122쪽)에 의하면, 1894년 르봉이라는 의사는 <인생: 생리학과 인간의 삶에 적용되는 위생학과 의학>이라는 책에서 균중의 행동이 정신적 병리에 의해 유발된다고 주장하면서 모방, 망상, 정신적 전염 등의 개념을 서술한다. 파리코핀이 그러한 전염병의 예시이며, 생물학적 비정상성에 견줄 수 있는 병리적 징후라는 것이다. 르봉은 <균중심리>(1895)에서 암시 감응성, 최면, 정신적 전염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집단적 인간행동을 설명했다. 이러한 심리학적 개념들의 조합은 집단행동이 ‘감응성 정신병’의 사례이고 전염병 규모로 퍼진다고 결론짓게 했다. 여기에 전제된 것은 “대중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도록 그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히틀러, 무솔리니 등이 선호한 자료였다고 밝혀졌다.

유신체제 성립과 더불어 일상적인 '유언비어'가 '불온'의 대상으로 강력히 처벌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언론 통제 구조가 정부의 공식적 담론에 대한 불신 풍조를 만든 데에 원인이 있다. '긴급조치'를 통해 일상적인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공권력으로 처벌하는 것은 역으로 유언비어가 통치권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저항적이며 통제불가능한, 일상적인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즉, '불온'은 완전히 '북한'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양한 '서발탄'을 규정하는 권력의 용어로, 다양한 반권력적, 비주류적 활동, 발언, 존재를 포괄하는, 즉 '타자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장되었다(이진경, 2011).

또한 '불온'은 권력에 의해 일방향적으로 규정되는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온'은 문학 등의 예술의 이름을 통해 현실 사회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드러내기도 하며<sup>7)</sup> 검열 작동 방식을 우회하거나 역으로 이용하면서 저항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한만수, 2015, 4쪽). 정병욱(2013)은 식민지 시기 민중의 일상에 '불온'을 대입하여 일상사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서 '불온'은 소시민의 일상적이고 사소한 불만까지도 '불온'으로 낙인 찍는 제국의 통치권력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백승중, 2013).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온'이 정상/비정상을 권력 입장에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시민들이 권력에 순응하는 '정상'을 스스로 거부하고 치욕스럽게 여기면서 스스로 '불온'한 존재가 되려 하는, '정상'과 '불온'의 "자리바뀔" 과정이다(백승중, 2013, 404쪽).

실제로 권력은 어느 정도의 '불온'을 허용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순응을 유도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송민호(2015)는 1910년대 일제가 집회 법률을 강화하면서 조선인의 정치적 집회를 금지시켰지만 학술성을 담보로 한 강연의 경우 어느 정도 용인해주었는데, 점차 강연회의 학술적·정치적 성격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검열 당국 또한 불온한 강연, 불온한 지식을 구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승만 정권 시기부터 시작된 "명랑화"의 기초가 1960년대 들어 좀 더 조직화되면서<sup>8)</sup> 대중문화 속에서 '명랑'은 체제에 대한 순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핵심어가 되었다(박선영, 2016; 소래섭, 2011). 예를 들어, 오락·코미디 장르는 "허용된 일탈"(이봉범, 2008, 41쪽; 박선영, 2016, 171쪽 재인용)로 기능했다.

7) 김수영과 이어령의 불온시 논쟁에 대해서는 류동일(2014)을 참고하라. 이 논쟁에서는 강압적 국가권력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문학 및 작가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불온'의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8) 박선영(2016)에 의하면 1964년 재건국민운동중앙회 등 단체의 발기로 '명랑한 시민생활 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1966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도 '명랑한 사회'가 언급되는 등 '명랑'을 향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불온에 대한 연구들은 무엇이 ‘불온’이었는지, 또 ‘불온’의 통치 기제 및 방식은 어떠한지,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그런데 유념할 것은 한만수(2015, 58~59쪽)의 지적대로 ‘불온’ 연구들이 주로 식민지 시기, 미군정기, 박정희 정권 시기 등 ‘억압적인’ 국가 권력이 노골적인 검열 체제를 갖추고 있었을 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의 검열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근대적 검열의 기원으로서 먼저 식민지 시기를 주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국가 단위의 연구가 민족주의의 재생산에 기여할 가능성 또한 우려한다. 이러한 지적에 기반을 두고 첫째, 불온의 연구가 집중하는 대상은 ‘예외상태’로서의 국가권력과 ‘불온’을 연결 짓게 함으로써 일상적이고 제도적 차원의 ‘불온’을 간과할 우려를 지닌다. 둘째, 이러한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불온’이 마치 이러한 시기에만 유지되어 왔던 가해자로서의 통치권력, 특히 외부의 침입자로서의 통치권력을 상징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재생산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불온’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적 잔재들을 계보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이 연구는 불온통신 규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졌고 노골적으로 억압적인 국가권력이 민주국가의 이름으로 바뀐 이 시점에서, 뉴미디어인 트위터에서 ‘불온’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불온’을 계보학적으로 구성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 2) 불온통신의 역사 및 의미

### (1) 불온통신 규제의 역사적 맥락

리처드 버트(Burt, 1998, p. 17)는 검열이 “한 장소, 한 시기를 넘어 발생하는 한 가지 이상의 것”이라고 언급하며 검열을 금지, 억제, 단일함으로 사유하기보다 ‘분산’(dispersal)과 ‘이동’(displacement)의 관점에서 다시 사유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검열이 단순히 어느 특정한 시기, 특정한 제도의 존재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불온’이 현재 인터넷 규제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특히 PC통신에서 시작된 인터넷 대중화 이후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앞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국내 검열 연구들의 연구 대상 및 시기들은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텍스트’ 중심, 문학 중심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미디어 규제 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신 및 미디어 검열 제도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고바야시 소메이(2011)는 한국 통신검열 체계의 기원이 식민지 시기에서부터 유래했다고 지적하면서 1910년 8월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고 9월 29일 「조선에서 시행하는 법률에 관한 건」(칙령

제412호)이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본 법령인 우편법과 전신법이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고 언급한다. 이는 “통신검열체제가 제국의 중심에서 식민지로 이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9)</sup> 한만수(2007, 60~63쪽)는 전화, 전보, 우편과 같은 통신, 철도, 인쇄 등의 근대 기술을 토대로 근대 신문과 잡지가 국가 단위 유통이 가능해졌으며, 통신과 철도를 조선총독부가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취재 및 송고과정을 비롯하여 해외 우편의 검열 등 근대 기술을 통한 담론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sup>10)</sup> 이러한 통신검열 체제는 “식민지기에 성립하여 미군정기를 거쳐 현대까지 약 1세기에 걸친 긴 역사적 계보를 가지는 하나의 사회시스템”(小林聰明, 2010: 고바야시 소메이, 2011, 156쪽 재인용)으로써 한국사회의 통신검열의 단초를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sup>11)</sup>

1919년 3·1 운동 이후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한 사상이나 정보 유통이 우편법과 전신법으로 규정된 ‘공안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추대상이 되는 등 ‘치안 법령화’되고, 1925년 「국가보안법」의 전신이라 볼 수 있는 치안유지법이 마련되어 다양한 사상운동을 단속하게 된다(고바야시 소메이, 2011, 170쪽). 또한 1960년 9월 6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만 해도 ‘임시우편단속법’으로 ‘빨갱이’와 ‘스파이’를 적발하기 위해 우편물이 검열되고 있었다.

건국 후 통신 영역을 규율하는 본격적인 법은 1961년 12월 30일 제정된 「전기통신법」(법률 제923호)과 「전파관리법」(법률 제924호)으로, 「전기통신법」 제6조는 “체신관서 또는 통신관서는 공안을 방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전기통신(불온통신)은 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전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신 내용에 대한 규제를 밝히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 시기 ‘불온’에 대한 다양한 방

9) 한편 아마무로 신이치는 각 식민지 지역 검열 제도가 일본의 그것을 토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검열제도의 제국적 천이(遷移)’라고 지칭하는데, 한만수(2015, 62쪽)는 이러한 시각이 제국-식민지의 관계를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제국중심으로 사고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방적 ‘천이’보다는 ‘상호참조시스템’으로 보는 것을 제안한다.

10) 예를 들어 근대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국에 의해 규정된) ‘비합법적’ 매체에게는 허용되지 않았고, ‘합법’ 매체에는 각종 기술이용료의 대폭할인 등으로 인쇄자본 통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 등은(한만수, 2007, 60~61쪽) 현재 통신규제에 있어서도 인터넷 매체들에 대한 각종 허가 및 등록제도 등을 통해 담론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형식적 규제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11) 한만수(2015, 52쪽)는 검열 연구가 ‘일국(一國)의 차원을 넘어 ‘제국(帝國)의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검열 제도연구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식민지시기 문화와 검열 체제가 단일 국가 영역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대만, 조선, 만주, 중국대륙과 동남아시아까지 일본제국의 강점지역 확장에 따라 검열체제 또한 확장되었고 각 지역 검열기구들의 ‘상호참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신문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식민지시기의 광무신문지법, 일본의 내열제도와 한국의 교정쇄 검열제도, 블랙리스트 제도 등 세세한 검열 제도 차원에서의 상호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식의 통제의 연장선상에서 「국가보안법」과 함께 ‘내치’를 달성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1983년 기존의 「전기통신법」은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3685호)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3686호)으로 분리되었다. 그간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전기통신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황철중, 1999: 정필운, 2014, 92~93쪽 재인용), 1991년 「전기통신기본법」이 전면 개정되고, 「공중전기통신사업법」도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4394호)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때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4394호)은 불온통신에 대한 취급 거부·정지·제한명령의 대상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하면서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두게 되었다(이해완, 2002). 이때부터 통신상 특정한 ‘내용’에 대해 통신사업자 혹은 정보매개자에게 일정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검열 혹은 규제에 통신사업자의 의무적인 협조를 강제하는 구조가 마련된다.<sup>12)</sup>

「전기통신법」상의 불온통신 규제가 전화, 전보, 우편 등 전기적 통신 기술을 대상으로 했다면,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기통신’의 범위는 PC통신,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를 포괄하면서 확장된다. 이러한 ‘불온통신’ 규제는 1990년대 국가 차원의 정보화 추진과 함께 PC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통신망을 통한 불건전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술 발전과 미디어 윤리의 부조화가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1992년 7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실무 대책 협의회에서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윤리위원회’의 구성을 협의한 이후 7월 30일 민간자율기구로서 정보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sup>13)</sup> 정보윤리위원회는 1994년 체신부 산하의 법정기구가 되어 컴퓨터통신(비음성정보)과 음성정보서비스의 음란물 유통 단속 업무를 맡게 되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근거하여 활동하였다. 1994년 정보통신부가 설립되고, 1995년 4월 13일자로 「전기통신

12) ‘불온통신’ 규제의 방식이 국가 → 정보매개자로서의 사업자 → 이용자로 이어져온 것 또한 불온통신 규제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불온통신 위험결정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으나,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구조 또한 이러한 구도로 이어져오고 있다. 인터넷 접근을 위해 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매개자 등의 ‘매개자’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국내만의 상황이 아니므로 이러한 매개자를 활용하여 국가가 개인의 정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사적 검열 문제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불온’이 뉴미디어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규제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차후에 진행하고자 한다.

13) 당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통신 이용자의 확대에 따라 음란물의 확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이러한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한국정보통신협회는 업계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 관련 단체 등 각계 13명으로 구성된 정보윤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인권침해, 법과 질서의 저해, 외설·음담패설, 위화감 조성, 비윤리적 소재의 오락물,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해치는 내용, 반국가적인 내용 등의 사항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한겨레, 1992, 8, 1).

사업법」 제53조의2에 의해 정보통신부 산하 법정기구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2, 80쪽; 김동민, 2002, 154쪽 재인용).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하며,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불건전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임하는 사항을 집행했다. 한편 불온통신 규제는 1999년 8월 11일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sup>14)</sup>

그러나 불온통신 규제가 위헌이라 결정되었다 해도 공안과 풍속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규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02년 12월 26일 위헌결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전문이 개정되었는데, 여기서 '불온' 통신은 '불법' 통신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각 호로 구체화되었다. 현재는 2008년 6월 13일 전문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음란, 명예훼손, 스토킹, 네트워크교란, '영리성' 청소년유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범죄교사 및 방조 등의 '불법통신'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대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2008년 이명박 정권 시기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해체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불법·유해정보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 (2) 불온통신 규제의 대상 및 내용

'불온통신' 규제의 역사적 맥락을 식민지 시기 일본의 전신법, 우편법에서부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불법정보와 유해정보 규제 체계까지 간략히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불온통신으로 규제되던 대상 및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온통신' 규제는 1999년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2002년 위헌으로 결정되어 공식적으로 '불온통신'이라는 이름의 규제는 사라졌다. 따라서 여기서는 PC통신과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 '불온통신'

14) 현재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을 "불온"으로 규정한 것은 그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또한 다양한 형식,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특성을 지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하였다. 또 여기서 현재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인정하면서, 불온통신 규제가 1961년 구 「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유선, 무선 등 전통적인 통신 매체에 대한 규제이자 '불온'을 정치적, 사상적으로 이용하며 표현을 억압했던 권위주의 정권 시기의 매체 규제가 별다른 변화 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면서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인 인터넷에 불온통신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재결 2002.6.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621~622).

규제가 주로 어떠한 대상을 규제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온통신’ 규제는 1961년 구 「전기통신법」에서부터 시작되며, 199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4394호) 제53조 제1항에서는 “공안을 방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전기통신”의 불온통신 개념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으로 용어를 달리한다. 동법 제53조 제2항은 이러한 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는 ①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③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해하는 내용을 불온통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온통신은 크게는 ‘공안’과 ‘미풍양속’으로 양분되지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회 내 다양한 발언의 통제 목적을 수행해왔다.<sup>15)</sup>

‘불온통신’ 규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그 심의대상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는 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만,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의미하므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3) 실질적으로 ‘사인’이 제공하는 정보 거의 모두가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 공개성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 간 사적 교환이나 전달은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정보의 ‘공개성’은 국가기관이 내용규제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한계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개성이 부정되는 한 그 내용에 상관없이 국가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인 한편, 통신이라 하더라도 ‘공개성’이 인정되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이해완, 2002; 황성기, 2000, 161~162쪽; 황승흡, 2001, 194쪽).<sup>16)</sup>

불온통신으로 규제되던 구체적인 대상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심의세

15) 아감벤에 따르면 독일에서 1926년을 경유하면서 ‘미풍양속’, ‘충분한 근거’, ‘대의명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위험한 상황’, ‘유사사’ 등의 개념들처럼 규칙이 아닌 상황을 가리키는 무규정적인 개념들이 법의 자리를 대체하게 됨으로써 “확실성과 계산가능성을 규칙의 외부로 옮겨버림으로써 모든 법적 개념을 무규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Agamben, 1998/2008, 324~325쪽; 권명아, 2013, 39쪽 재인용). 권명아(2013, 37~39쪽)는 이를 인용하면서 풍기문란의 개념 또한 그 자체로는 무규정적인 개념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배제의 담론 구조가 근대적인 시민권, 국민의 자질을 판단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비국민을 추방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이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16) 이후 살펴볼겠지만 SNS와 같은 뉴미디어에 국가가 개입할 때도 ‘전파성’과 ‘공연성’이 그 근거 논리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 매체 규제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근거는 대체로 매체의 ‘공개성’을 기반으로 시작되는데 SNS는 친교를 기반으로 한 사적 공간이라는 개인 이용자의 인식과 공적 공간으로서 매체를 규제하려는 권력의 인식이 상반되어 충돌이 빚어지는 미디어라 볼 수 있다.

칙을 살펴보면 매우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다. 심의규정 제13조(국가의 질서유지)에서는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sup>17)</sup>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고, 제14조는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범죄행위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제15조는 선량한 풍속 등 보호에 대한 것으로 성적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 음란, 폭력물을 판매 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 성폭력이나 마약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등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내용,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게 표현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무단 침해, 도박 등의 사행심 조장 내용,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 내용, 의료, 기구, 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표현의 내용이 그것이다.

안창현(1998)은 1990년대 국가검열을 검찰, 경찰,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 선거법, 형법 등 현행법을 통한 사전억제나 사후제한을 가하는 경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로 나눈다. 여기서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는 대체로 현실공간의 정치적 사안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크게 구분하면 첫째, 국가 안보 및 북한 관련한 표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사례, 둘째로는 정치인, 대통령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비판, 선거법 위반 사례,<sup>18)</sup> 세 번째로는 음란, 폭력물에 대한 규제<sup>19)</sup>를 예로 들 수 있다.

17)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헌정질서 부정 및 비방 내용, 국가원수 모독,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내용, 국제간 우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18) 1996년 4.11 총선과 1997년 12월의 대선 등 선거를 전후해 정치적 의견을 게시하거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경우 구속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나 형법상 '명예훼손' 죄를 적용받아 4.11 총선 때는 2명 구속, 18명 불구속, 15대 대선 때는 50여명 정도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1998년 1월 6일 제10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심의 규정을 바꾸어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명시하여 법령에도 없는 국가원수모독 항목으로 6건을 심의하고 5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삭제1, 경고3, 이용해지1)하였다. 1999년에는 반국가행위 항목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9건 중에 5건을 삭제 요청했는데 그중 2건은 대통령과 여당에 관한 안티 게시물이었다. 2001년 들어서는 안티 DJ 게시물 심의건수가 최다를 기록했는데 심의 47건에 시정요구 21건이 있었던 반면 다른 정치인에 대한 시정요구는 한 건도 없어 현직 대통령 관련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벌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1997년 통계에서 보듯이 선거기간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대한 후보자 비방죄, 명예훼손의 포괄적 적용 등으로 대립이 심각해 진 것을 볼 수 있다(안창현, 1998, 125쪽).

19) 1990년대 피바다학생전문공작소 폐쇄사건, 이승희 홈페이지 수사사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음란사이트 차단 사례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1998년 처음으로 형법이 아닌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

1990년대 들어 PC통신이 대중화되면서 시사, 정치 동호회들이 인기를 얻었는데, 1993년 11월 15일 데이콤은 자사 통신망 ‘천리안’ 내 ‘현대철학동호회’를 자체 모니터링하여 ‘사노맹’ 관련 글이 게시된 게시판을 일방폐쇄했다. 또 이에 대한 반발로 게시판 글을 복구한 이후에도 이 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판단하여 체신부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경찰에 신고했다(한겨레, 1993, 11, 17).<sup>20)</sup> 또 1996년 연세대학교에서 ‘한총련 사태’가 일어났던 시기에는 한총련 의장 등에 대한 ID 이용정지 및 한총련 CUG(Closer User Group) 폐쇄가 있었으며, 1997년 5월 한총련이 게시한 게시물이 ‘불온통신’으로 삭제되었다. 무장간첩 사건 발생 이후 1997년에는 북한 관련 사이트들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다(안창현, 1998).

또 1990년대 불온통신으로 웹 사이트가 폐쇄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퇴 학생들로 이루어진 아이노스쿨(<http://www.inoschool.net>),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이반시티(<http://www.ivancity.com>) 등이 있었다. 장우영과 유일상(2005)은 오프라인에서 활동이 어려운 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폐쇄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지배 집단의 편견과 관용 결핍이 이유라고 설명한다. 또 자신과 부인의 누드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린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 또한 삭제되었다가 사회단체들의 항의와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불온’ 정보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로 재심의되기도 했다.<sup>21)</sup> 불온과 유해

---

의 2가 적용되어 통신 및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을 형법상 규제와 구별하여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3월 6일 미국 〈플레이보이〉의 전속 모델인 이승희의 전라 사진 3장을 PC통신과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통신이용자(노모 씨, 32세)가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형법상 음화전시의 혐의와 함께 예비적 청구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채규성 판사(서울지법 형사8단독)는 이 사진들이 “체모까지 드러나는 등 음란성이 인정”되지만 이것이 컴퓨터공간에 게시된 사진이라는 점에서 “음란한 문서, 도서, 필름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음향이나 영상물까지 포함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하여 1998년 9월 29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지법 1998.9.29. 선고, 98고단206). 이 판결은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해 형법상 음란물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인터넷상 누드사진을 ‘컴퓨터영상’으로 판단한 것이다(황승훈, 1999b).

20)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를 비롯하여 ‘희망터’, 하이텔의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나우누리의 ‘찬우물’ 등의 정치·시사 관련 동호회들이 1990년대 들어 PC통신에서 인기를 끌었다. 언급된 사건에서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현대철학동호회’의 회장 김형렬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는데, 이는 당시 뉴미디어인 PC통신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첫 사례이자 이념적 표현을 문제 삼아 구속한 첫 사례다.

21) 장우영과 유일상(2005)은 규제의 화살이 해당 웹사이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최상위 사업자에게로 향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라고 언급한다.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나 아이노스쿨, 이반시티 등은 한국통신, 메가패스 등 회선제공업체와 웹호스팅 업체에 의해 강제 폐쇄되었다. 또한 2001년 7월 진보네트워크와 전국연합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정보로 심의하여 이에 대한 삭제를 해당 사회단체가 아닌 회선제공업체와 IDC 서비스 업체(KIDC) 등에 요구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NGO, ISP 간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해당 업체들은 문제가 되는 게시물만을 선별적으로 삭제할 권한이나 기술적 수단이 없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서버 전체를 중단하거나 회선 폐

는 정상과 비정상, 건전과 불건전을 끊임없이 이분화하는데, 비정상 불건전에 해당하는 정보는 대체로 그 사회의 비주류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즉 이는 어떤 정보가 ‘정상’이나 ‘건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것, 권력자의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처럼 불온통신 규제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치적 표현, 음란물을 비롯하여 사회적 소수자, 비주류를 대상으로 해왔다. 최근까지도 국방부 ‘불온서적’ 리스트, 불온 앱 삭제, 예술가 블랙리스트,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삭감 등을 비롯하여 ‘불온’은 다양한 의미에서 권력에 저항적인 것들을 포괄해왔으며 분단의 현실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불온’ 규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불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뉴미디어에서 ‘불온’이 구성되어가는 방식과 과정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푸코(Foucault, 1978/2014, 115~117쪽)는 감옥 연구를 통해 제도로서의 감옥의 역사가 아니라 ‘감금이라는 실천’의 역사, 즉 ‘도덕의 테크놀로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의 변화 경로를 추적해 ‘도덕의 계보학’을 조명하고자 했다고 밝힌다. 이 연구 또한 다소 느슨한 의미에서 푸코의 계보학적 방법론을 따르며, 국가가 자신을 수호하기 위한 권력의 ‘실천들’로서, 다양한 ‘검열 테크놀로지’의 일환으로서, 또한 한국 사회의 역사적·사회적·정치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복합적인 ‘실천들’로서 ‘불온’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뉴미디어인 트위터에서 ‘불온’이 어떻게 규정되고, 박정근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불온한 존재’로 구성되어가는지를 살펴보면<sup>22)</sup> 국가의 권력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을 법적 담론, 법의 집행, ‘불온’ 및 ‘종북’과의 연관성 등 복합적인 ‘실천들’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트위터 계정에서 2010년 3월부터 @seouldecadence라는 계정으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유튜브, 트위터 등의 게시물을 96건 리트윗하고 이적

쇄, 해당 서버의 IP 주소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진보네트워킹센터, 2001, 112~115쪽; 장우영·유일상, 2005 재인용). 따라서 진보넷 등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백 개 사회단체 홈페이지들이 일시에 네트워크에서 사라지는 사태도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통신사업자나 포털사업자 등의 정보매개자를 통해 국가는 스스로 원치 않는 정보에 대한 차단을 실시하고 있다.

22) 이 연구는 뉴미디어인 트위터가 ‘불온’과 연관되는 방식, 더 나아가 박정근이 ‘불온한 존재’로 규정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임유경(2013)의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음을 밝힌다.

표현물 34건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과 5항<sup>23)</sup>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박정근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부의 담론과 해당 사건에 대한 맥락 파악과 담론의 생산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를 대상으로 지면기사 검색 서비스인 아이서퍼를 통해 해당 사건이 발생했던 무렵인 2011년 9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박정근', '리트윗 보안법'이라는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5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보수지들은 해당 키워드로 검색한 기사가 각각 6, 1, 4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21, 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경향신문>, <한겨레>에서 박정근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중심소재로 실었던 반면, 보수신문은 해당 사건의 진행과정이나 의미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주변소재로 다루었다.<sup>24)</sup> 이 사건은 '리트윗 공안 사건'으로 불리며 뉴미디어인 트위터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다.<sup>25)</sup>

이 연구는 '불온'이 뉴미디어의 특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되어가는지, 또 '불온한 존재'로서 해당 인물이 어떻게 규정되어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검찰의 구속영장과 1심 재판 판결문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이에 대한 비판 담론으로 형성된 진보 신문의 담론을 참고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트위터라는 뉴미디어를 '불온'과 연관 짓는 법 담론

23)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24) 이 사건의 1심 재판 결과를 보도한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온라인 기사 제목을 비교해보면 흥미롭다. 2012년 11월 21일자 온라인 기사로 두 매체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다르게 강조하여 보도하였다. <한겨레신문>은 "북한 '우리민족끼리' 글 '리트윗' 박정근씨 유죄 논란", <동아일보>는 "北 이적표현물 '리트윗' 박정근씨 집유2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박정근이 리트윗한 대상물 '이적표현물'로 표현하고, <한겨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우리민족끼리'라고 표현하였다. 또 <한겨레>가 이 판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 <동아일보>는 '집유2년'의 판결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실형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 있었다.

25) 경찰은 2011년 9월 21일 박정근 자택과 사진관을 압수수색하였고, 박정근은 그 상황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렸다. 2012년 1월 11일 검찰은 박정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박정근의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이 이적표현물의 리트윗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다. 박정근은 2012년 2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1개월 10일간 구속되어 있었으며, 경찰의 압수수색에서부터 시작된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까지는 만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과 그에 대한 저항담론으로 형성된 진보 신문의 담론을 통해 법 제도 내에서 ‘불온’이 어떻게 의미를 획득해가는지, 그에 대한 저항담론은 어떤 식으로 ‘불온’에 반발, 저항, 동조하는지 등을 살펴보려 한다.

#### 4. ‘불온’한 매체로서의 트위터

##### 1) ‘전파성’과 ‘공연성’으로 인한 전염의 가능성

박정근은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사이트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트윗(RT)하거나 링크 공유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의 구속 사유에 대해 트위터의 매체적 특성인 “무차별적 재전송으로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구속 결정 하루 전날 박정근은 트위터를 통해 다시 ‘우리민족끼리’의 사이트를 리트윗했는데, 이러한 행위를 통해 박정근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박정근은 구속 상태에서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법원의 구속 적부심사 또한 기각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박정근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고로 3심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보도는 보수신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았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 보도되었으며, 특히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검찰 기소나 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박정근의 구속을 정당화하고, 1심의 유죄를 선고하는 데는 트위터의 매체적인 특성으로 ‘전파성’과 ‘공연성’이 적용되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상대방의 허락 없이 팔로어로 등록하여 그 사람의 게시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받아볼 수” 있는 매체이며 리트윗 행위로 게시글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트위터가 게시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공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트위터 이용자가 통상 팔로어에게 전송한 게시글은 그 게시자가 내용이나 형식에서 사적 형태를 갖추려고 의도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팔로어들이 그들의 팔로어들에게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내용이나 지속성이 다른 인터넷 매체

에 비해 짧다거나 정보의 수령·취득에 있어서 이용자의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이용자에 의한 자정효과로 무용한 정보가 도태된다는 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2.11.21. 선고, 사건번호 2012고단324)

이처럼 재판부는 트위터의 ‘공개적’인 속성과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때문에 해당 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박정근 측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리트윗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글이 조롱과 패러디 목적이었으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자유도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유가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 북한이 통일을 위한 대화,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를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것이다(대법원 201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참조: 수원지방법원 2012.11.21 선고, 사건번호 2012고단324 재인용).

그러나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트위터를 “사전에 관계를 맺은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적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트위터를 ‘전파성’과 ‘공연성’을 이유로 규제하는 데 반대한다. 아래 인용한 칼럼에서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대비를 통해 사적 공간은 ‘법이 개입할 수 없는’ 공간임을 전제하며, 140자 이하의 단문, 시간이 지나면 찾아보기 힘든 ‘휘발성’, 술자리 대화나 낙서와 같은 ‘구술생활’적 성격이 ‘사적 공간’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애초 트위터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규정한다. 또 트위터의 “관계중심 서비스”의 특성을 “정보 단위”로 규제하는 것이 매체 속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트위터에서의 소통은 반드시 트위터 작성자-팔로어 간에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공개 계정이 아닌 이상 제3자들도 자유롭게 트위터 작성자나 팔로어의 계정에 게시된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는 원작성자의 계정과 팔로어의 계정은 등가다. 원작성자와 팔로어 모두를 처벌해야지 원작성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물론 그렇다고 둘 다 처벌한다면 또 다른 문제, 즉 연좌제를 발생시킨다. 관계중심 서비스인 트위터를 정보 단위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박경신, 2012, 12, 4)

한편으로는 이러한 매체 속성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보다는 뉴미디어에서 정부 비판적 발언이 폭발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지에 기반한, 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다.** 개인의 트위터 리트윗(RT: 재전송) 행위는, ‘복과’의 지령을 받아 출근시간 광화문에 대자보를 걸어놓는 것과 많이 다르다. **빠르게 여론이 모여 지상파 뉴스와 맞먹는 강력한 전파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냥 한 줌의 사람들끼리 킁킁거리다가 끝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매체 자체를 몰고 늘어지기보다 훨씬 정밀하게 소통상황을 인식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김낙호, 2012, 10, 15)

이쯤 되니 나는 공안당국이 생각하는 북한이란 무엇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영양소가 풍부한 김정일이 맨주먹으로 미사일을 때려잡고 카섹스를 하며 축지법을 써서 11월11일에 박정근에게 빼빼로를 가져다주는 곳인가? 아니면 너무나도 전염성이 강해서 그제 심지어 트윗일지라도 한 번만 보면 북한에 대한 찬양과 고무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걸까? 경제력, 군사력, 인구, 과학기술력 어느 것도 압도적이지 않은 것이 없는 한국사회의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을 만큼 그들의 트윗 선동전술은 신묘하단 말인가? (최태섭, 2012, 11, 1)

법 담론이 트위터를 ‘전파성’과 ‘공연성’을 가진 매체로 규정하며 이를 이유로 법적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몇 가지 전제를 갖고 있다. ‘전파성’은 “빠르게 여론이 모여 지상파 뉴스와 맞먹는 강력한 전파력을 발휘”(한겨레, 2012, 10, 15)하는, 즉 빠른 여론 확산과 그에 따른 취약층의 ‘전염’, 국가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대중의 ‘동원’을 우려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파자’를 처벌한다. 또 특정 매체가 ‘공연성’을 가진, 즉 ‘공개적’인 공간이라면, 법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갖는다. 반면, 진보 신문의 반론은 첫째로는 트위터를 ‘공연성’, ‘전파성’을 가진 공간으로 규정하는 법 담론의 전제를 부정하면서 트위터가 ‘사적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또 ‘사적 공간’에는 법이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로는 ‘공연성’을 갖더라도 매체의 특성이 문제가 아니라 왜 뉴미디어에서 반 정부적 발언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2) ‘타임라인’의 맥락성

트위터의 특성인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박정근 측은 타임라인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해당 게시글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팔로어가 아닌 이상 타임라인 전체의 맥락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타임라인'의 속성에 대한 엇갈리는 입장은 이것이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가 아니라 풍자와 조롱의 맥락임을 짐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박정근 '내심(內心)'의 추측을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팔로어의 트위터 타임라인(자신과 팔로우한 사람들의 게시글을 모아 보여주는 부분)에는 자신이 팔로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게시글이 수시로 전송되어 나타나므로 피고인의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팔로어가 아닌 이상 트위터 게시글만으로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은 모두 피고인의 게시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지 않고 각 게시글 전송 전후로 근접한 시간 내에 피고인의 게시 의도를 추단할 만한 게시글이 게재되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을 조롱하고 패러디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제3자에게 이른바 중복주의자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재미를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616쪽) 등을 종합하면, 트위터 또는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게시물을 접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관적 의도를 전달받지 못한 채 접하게 될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트위터 상의 다른 게시글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2.11.21. 선고, 사건번호 2012고단324)

이처럼 재판부는 일반의 사람들이 박정근의 주관적 의도를 짐작할 수 없으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사상에 동조, 선동되기 쉽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박정근 구속영장에 따로 정리되어 있는 '트위터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은 트위터의 매체적 특성 이해를 위해 검찰 측이 작성한 것으로 이것이 구속영장 일부라는 점에서 박정근의 리트윗 행위를 이미 범죄로 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트위터의 매체적 '위험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구속영장에서 트위터는 "평균 4명만 거치면 어떠한 사용자와도 소통이 가능"한, "현대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다. 특히 "중3이 박정근의 트위터에 팔로어 신청·동화되어 인터넷에 '10대 좌파당' 개설"한 사례처럼 판단력이 미숙한 계층의 '전염'을 우려하여 법적 개입이 정당화된다. 또 팔로잉-팔로어 관계로 이뤄져 있는 트위터는 한쪽 이용자만 신청해도 이를 자신의 타임라인에서 볼 수 있으므로 박정근의 글과 같은 '위험'한 글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서로 '맞팔'하게 되면 1:1 쪽지 기능을 통해 "비밀스

런 대화 전달에 주로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다<sup>26)</sup>고 지적하고 있다(김남일, 2012, 2, 24).

진보신문의 담론들은 이러한 타임라인의 특성을 지적한 데에 대해 첫째, 국가 안보가 한 두 개의 글로 위협받을 수 있을 만큼 취약한지, 둘째, 어떤 위협의 가능성만으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셋째, 글의 전후 ‘맥락성’과 풍자와 조롱 등의 개인적 ‘내심’을 표현자가 ‘이해시켜야 하는지’ 등을 질문한다.

담당검사는 박씨의 농담들이 트위터의 특성상 단문이고 전후 맥락 없이 리트윗될 수 있는 데다, 그 농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만큼 이것이 농담이나 장난이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그 의도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오독 가능성이 있는 모든 농담들은, 그 위해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지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담의 말미에 “농담입니다, 하하하”라고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될 모양이다.** (최태섭, 2012, 11, 1)

판결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 얼마나 허약하기에, **그깟** 북한찬양 게시물로 인해 실질적 해악을 입는지 **의아했다**. 이른바 ‘북한 찬양 게시물’은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쉽게 볼 수 있고, 문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계정 역시 누구나 팔로해서 열람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박씨의 리트윗트가 특별히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볼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 예컨대, 그가 리트윗한 북한 찬양 게시물을 보고 ‘대한민국을 적화시켜야겠다’는 의욕을 갖거나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런 게시물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에 실질적 해악을 야기했다거나 그럴 위험이 임박하지 않는 한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다.** 별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 박정근씨가 리트윗한 게시물을 보고 북한에 호감이 생겨서 남한의 정보를 북에 넘겨주거나 적화통일을 위한 무장단체를 결성한다면, 그것은 간첩죄나 내란·외환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이 **창출되기도 전에 어떤 막연한 가능성만 가지고 누군가를 벌할 수는 없다.** (홍성수, 2012, 11, 26)

26) 이는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CUG를 폐쇄시킨 당국의 결정을 상기시키는 점이 있다. ‘위험한 인물’이나 ‘위험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규정된 이들끼리 ‘사적으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행위에 당국이 매우 민감해 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예방하고자 사적 개인들 간의 소통행위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제정을 주장하는 것 또한 IS의 소통 수단, 중복 담론의 진원지 등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가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박정근의 사례는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는 유머의 대상이 무엇인지”(문강형준, 2012, 11, 24)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즉 “반공 프레임 자체를 농담의 소재로 삼는 자유분방한 경향에 대해 공안 기관이 철퇴를 가하는 이유”는 “반공 프레임 자체가 ‘가벼워지는’ 상황 자체”다(박가분, 2012, 10, 28).

이처럼 법적 담론은 타임라인의 ‘맥락성’이 박정근의 ‘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매체 특성인지를 의심하면서 전파성과 공연성의 매체 특성을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글쓴이의 사적 의도와 관계없이 규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한편 진보신문의 담론은 박정근의 북한 관련 트윗, 리트윗이 타임라인의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관련 표현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사항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한편, 북한 관련 표현을 할 경우 이것이 확실한 ‘농담’, ‘풍자’, ‘조롱’의 의도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 3) ‘기타의 표현물’로서의 트위터

그렇다면 북한 관련 게시물은 「국가보안법」을 구성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가. 검찰 측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트위터, 유튜브를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였다.<sup>27)</sup>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이적표현물을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로 규정하였는데, ‘유체성’이 없고 ‘물건’도 아닌 트위터 게시글과 같은 인터넷 게시글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적표현물’의 범위를 넓힌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이라고 정하고 있고, ‘문서’나 ‘도화’가 문자나 기호, 부호 등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물체를 의미하므로 ‘기타의 표현물’ 또한 어떤 물체에 영속적인 방법으로 고정되어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표현물’의 사전적 의미인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드러내어 나타낸 글이나 그림, 음악 따위의 결과물’이 반드시 유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 및 해당 조항에서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물의 경우와 같이 ‘물건’(민법 제98조에 정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27)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2010. 3. 21. 트위터에 ‘seouldecadence’라는 아이디로 계정을 개설하여 북한 조평통에서 체제 선전, 선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사이트, 트위터, 유튜브 등에 접속 이적표현물 384건을 취득, 반포하고, 북한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 200건을 작성 팔로워들에게 반포하였으며, 학습을 위하여 이적표현물인 북한 원전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을 취득 보관함. (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보아야 한다)으로 표현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인터넷 등을 이용한 표현 또한 ‘기타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 2012.11.21. 선고, 2012고단324)

즉, ‘표현물’이 반드시 ‘유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으로 표현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은 ‘기타의 표현물’에 해당하므로 유체성이 없더라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가 ‘이적표현물’이고, 트위터가 전파성과 공연성을 충족시키는 공간이라면,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의 경우 ‘이적표현물’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고, 박정근의 북한 관련 게시글은 충분히 선전, 선동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적표현물’이 인터넷 표현에도 적용하는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차단한 사이트 건수가 2008년 2건 이래 2009년 10건, 2010년 51건에 이어 2011년에는 139건으로 급증했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sup>28)</sup>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2항8조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의 사이트를 업무상 활용해야 하는 통일부 출입기자나 공무원들은 우회로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에 단순 접속하거나 조회 및 공익 목적으로 연구자나 언론인이 접속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나 “북 지도자나 체제를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유포·교육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사에 인용된 임국빈 경찰청 보안2과장은 접속과 조회는 불법이 아니지만 “중북 카페를 만들거나 가입한 사람들, 판단 능력 부족한 청소년들은 깜빡하면 넘어갈 수 있다”며 “혹시라도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겨레, 2012, 2, 6). 이러한 사이트들에 접속하거나 조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내용들을 유포하여 특정 목적에 이용했을 때 불법이 되는데, 그러한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접속과 조회도 미리 막는 셈이다. 〈한겨레〉(2012, 2, 6)는 북쪽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면서 북한 사이트 차단이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굳이

28)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적표현물 계재로 차단된 해외 사이트 종류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뿐 아니라 ‘선군도서관’·‘통일학연구소’ 등의 학술 사이트, ‘조선관 쇼핑몰’·‘DPR KOREA SHOP’ 등의 쇼핑몰 사이트 등이었다. 특히 ‘우리민족끼리’가 유튜브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선전활동을 본격화한 2010년 8월부터 대부분 이를 통해 확산되었는데 방심위가 이 계정을 차단하면 즉시 계정을 새로 만들어 ‘우리민족끼리’라는 동일한 ID로 선전활동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동아일보, 2011, 8, 30)

차단할 필요가 없으며,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압도적으로 우위이므로 북한 사이트 개방으로 위협받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알기 위해 사이트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단지 표현의 자유나 개인적 호기심에서 북한에 대해 접촉할 수 있다는, 개인적 자유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미 체제대결에서 승리한 현재 북한은 전혀 위협적이거나 궁금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를 개방하더라도 친북세력의 증가와 같은 “보수세력이 우려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

## 5. ‘불온한 존재’로의 확장: 범죄의 처벌에서 범죄자 ‘개인’으로

앞선 논의에서는 ‘불온한 매체’로서 트위터를 규정하는 법적 담론과 그에 대한 반론으로 형성된 진보 신문들의 담론들을 보여주었다. ‘전파성’과 ‘공연성’의 맥락에서 트위터의 ‘위험성’을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인터넷 콘텐츠까지 확장되면서 논의는 점차 범죄의 처벌에서 범죄자 ‘개인’의 속성에 대한 평가까지로 연장된다. 푸코(Foucault, 1975/2003)는 〈감시와 처벌〉에서 형벌 제도가 위법을 응징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구체적인 처벌의 방식이 ‘인간화’되면서 형벌은 범죄자의 ‘육체’에 대한 직접적 제재뿐 아니라 ‘정신’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의 처벌뿐 아니라 범죄자 개인을 둘러싼 평가, 진단, 예후, 규범에 대한 판단의 총체가 형사재판의 골격 속에 자리 잡게 됨을 의미한다. 판결은 여기서 규범성의 평가와 규범화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명령을 내포하게 된다(Foucault, 1975/2003, 45~47쪽). 박정근의 리트윗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가 행한 다른 사회 비판적인 활동들, 그가 읽었던 책, 집에 있던 북한 관련 문건, 정당 활동 등 다양한 그의 행위와의 연관 속에서 그의 ‘내심’이 추측된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가 ‘유체성’이 없더라도 ‘표현물’에 해당함을 규정했다면 표현물의 이적성의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성립하려면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대법원 201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해야 한다는 이전 판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에 근거하여 박정근의 대내외적 활동, 즉 북한에 대한 개인적 관심, 사회당 당원으로서의 활동, 정부 비판적 활동 등이 이적행위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된 것이다.

피고인은 사진사로서 구 소비에트 연방 및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영상물과 그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북한 원전인 사회주의건설리론 등 북한 관련 서적을 열람함**으로써 북한 체제와 그 사회에 대한 각종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경 인터넷 에스엔에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일종인 ‘트위터(twitter)’에 가입하여 …… **북한 노동당 외곽 대남선전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인터넷 상 대남선전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트위터로 전송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및 논평, 노동신문사설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자료를 계속 구독하면서, 그중 일부를 자신의 팔로어(2011. 12. 31. 현재 약 3,700명)에게 리트윗하여 전송해오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 초경부터 정부개발정책 반대모임인 ‘두리반’ 활동을 하던 중, 동료로부터 사회적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인 사회당에 입당할 것을 권유받고, 사회당의 강령 중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부분에 동조하여 2010. 12. 17. 경 사회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최근까지 대학등록금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 포이동 주거복구대책 요구,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국가보안법 철폐 등 문제와 관련한 집회 참석 등 각종 사회 활동에 동참해 오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2.11.21. 선고, 2012고단324)

이처럼 사회비판적 활동과 사회당 가입 사실 등이 판결문에서 언급되는데, 이는 보수 정권 이후로 급증한 「국가보안법」 관련 공안 사건, 다양한 반(反)정부적 활동 및 발언, 인물에 대한 ‘중북’ 낙인찍기 등의 맥락<sup>29)</sup>에서 ‘진보적 시민을 탄압하기 위한’ 권력의 통치 기

29) ‘중북’은 보수 정권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의 증가, 공안 정국의 조성 등에서 점차 확장하여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반대 세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된다. 이는 종편의 개국과 보수적인 인터넷 매체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일상화, 회화화되기도 한다(한겨레, 2013, 3, 8). 2012년 6월 8일 〈중북좌파〉 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2012, 6, 8)는 ‘중북 좌파’ 논란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면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그에 저항하는 모든 시도들을 ‘중북 좌파’라는 하나의 범주로 엮어내어 대중의 적대적 평가를 유도하려는 담론 전략임을 지적하였다. 또 2015년 11월 4일에는 임수경 의원과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주최한 토론회인 〈중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에서 ‘중북’ 개념이 이전의 ‘빨갱이’라는 표현을 대체하면서 최근 5년간 급격히 사용이 증가되었으며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악용되고 있다

제로 작동된다. ‘중복 척결’을 사회적 목표로 내세운 담론 전략과 구체적인 ‘국가 장치’를 활용한 다양한 법 제도적 실천이 ‘중복’을 사회적 위협으로 구성한다. 〈한겨레〉는 다양한 공안 사건의 맥락과 중복 담론 속에서 박정근과 같은 진보적 시민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국가보안법이 활용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또한 박정근씨의 혐의사실에는 두리반 철거민 투쟁, 포이동 주거복구 공대위 활동, 반값 등록금 집회,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퍼포먼스, 희망버스 참가 등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실들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국가보안법을 빙자해 진보적 시민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강하게 든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중복 척결을 외쳤고 이른바 ‘왕재산’ 사건이라는 소설 같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이제는 무차별적 개인에게 막무가내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정치 사찰과 탄압을 일삼게 됐다.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박용환, 2011, 9, 29)

실제로 박정근 구속 이후 한 회사원은 ‘#표현의\_자유와\_박정근을\_생각하며\_우리민족끼리\_일\_5회\_리트윗’이라는 트윗을 쓰고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이적단체 구성) 위반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40시간 넘는 취조를 받기도 했다(경향신문, 2013, 12, 21).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진보 매체들은 ‘철 지난 국가보안법’, ‘공안 탄압’, ‘공안 몰이’, ‘무리한 법 적용’ 등의 표현으로 이를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보수정권의 집권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가 증가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2012)은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라는 보고서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2008년 이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중 대표적 사례로 박정근 사건이 제시되고 있다.<sup>30)</sup> 프리덤하우스는 ‘트위터 글 공유 때문에 기소된 한국 사회운동가’(South Korean Activist Indicted for Sharing Tweet)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박정근 사건을 예로 들

고 지적되었다.

30)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정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북한 관련 토론을 통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에서 2002년 11월까지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82명에서 41명으로 줄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서 2007년에는 최소 8~9명 선이었으나 이명박 정권부터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표현의 억제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Amnesty International, 2012, 1쪽).

면서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 관련 자료에 대한 대대적 ‘검열’이 실시되고 있으며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는 2010년 한국을 방문하여 “기존 법률을 더욱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긴 역사”가 있기에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사회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철 지난 국가보안법”으로 개인을 탄압하려 한다고 비판하였고(한겨레, 2011, 9, 29), 〈경향신문〉은 엠네스티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비판한다.<sup>31)</sup>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법 적용이 증가한다 해도 다양한 대항풍행 또한 발생한다. 외신, 국제 인권단체들의 규탄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박정근의 구속기소를 규탄하거나 박정근을 후원하는 단체가 생기기도 했다. 또 트위터에서는 박정근과의 ‘연대’를 표명하고 국가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트위터 프로필을 박정근과 똑같이 교체하거나, 트위터 해시태그를 ‘#나는 박정근이다’로 작성하는 등의 흐름이 있었다. 특히 예술계에서 이 사건은 국가권력과 검열,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여러 작품의 모티프로 활용되기도 했다. 가상의 인물로 설정된 ‘북조선 핑크 록커 리성웅’전(展)을 기획하거나<sup>32)</sup>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관련한 연극 무대<sup>33)</sup>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신문들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며 의제설정에서 제외시킨 반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진보 매체나 해외 인권단체 등은 ‘뉴미디어’와 ‘구 시대적 국가보안법’을 대립시키면서 ‘중복 담론’과 ‘공안몰이’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진보 매체 또한 표현의 자유 대 억압, 사적 공간 대 공개적 공간이라는 대립 구도에서 오가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즉 북한 관련 발언을 할 때 자신의

31) 국제엠네스티는 2013 연례보고서에서 “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자의적으로 이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죽했으면 외신들이 박씨 사건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농담을 하다가 감옥에 간다”고 했을까(경향신문, 2013, 8, 24)

32) 기획자들은 ‘리성웅’이라는 가상로커의 일대기를 통해 게임 섯다운 제도, 웹툰 검열, 여성가족부의 음악 검열 등 한국 사회의 문화 탄압을 비판하려 했다고 밝히며 이 이야기를 “북한판 박정근” 이야기로 꾸리고자 했다고 말한다(경향신문, 2012, 3, 12)

33) 2013년 활동 20주년을 맞은 ‘혜화동 1번지’의 봄 페스티벌 주제는 ‘국가보안법’으로 그중 윤한술의 〈빨갱이, 갱생을 위한 연구〉는 박정근 사건을 주제로 한 것이다(경향신문, 2013.7.18., [객석에서] 국가가 너를 갱생시키리라, 강제로)

발언이 ‘농담’이라는 점 혹은 ‘찬양, 고무’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시켜야 한다는 점을 진보 신문 또한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위축효과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정근 사건은 트위터라는 매체의 성격을 ‘불온’과 연결하여 규정하는 데서 나아가 박정근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그의 ‘내심’과 ‘의도’를 추측하게 하는 ‘불온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박정근 자체가 ‘불온한 존재’임을 정의하는 법 담론의 확산 속에서 구성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현실의 법을 통해 특정 미디어를 위협의 공간으로 묘사하거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중복’으로 규정하면서 ‘중복’은 북한의 추종이라는 본래 의미를 넘어 북한에 대한 조롱, 비판, 농담까지, 거기에 한국 사회와 정치 비판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장된다.

## 6.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불온통신’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불온’이 의미를 획득하고 있음을 박정근 사건 관련한 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주로 국문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불온’에 대한 연구가 ‘불온’을 어떠한 의미에서 분석해 왔는지, 식민지 시기와 권위주의 국가권력에 의해 행해져 온 치안, 풍속 관련 통제와 북한 관련 발언의 금지, 더 나아가 정치적 발언의 금지화와 어떠한 연관을 맺는지 살펴보고, 개개인이 매체의 주인이 되는 SNS 시대에도 ‘불온’의 작동방식과 과정이 한국사회의 ‘불온’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불온’에 대한 규제는 진보신문들에 의해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 된, 낡은 구시대적 개념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보수적인 국가권력이 여전히 ‘중복’과 ‘북한’을 동원하여 내부를 결집하고, 다양한 진보적 발언을 차단하는 굳건한 상징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에 진보 신문의 담론들은 주로 20~30대의, 박정근 또래의 젊은 화자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구시대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트위터를 활용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혹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매우 ‘철 지난’ 혹은 우스꽝스러운 국가권력의 작동 방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 담론에 대응하는 진보 신문들의 반론을 살펴보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법(法)이라는 이름의 권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트위터는 ‘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적 공간’에는 법이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규

제는 불가능하다는 법 담론의 입장을 뒤집어 놓은 셈이다. 또 박정근의 표현이나 리트윗이 농담이나 풍자, 조롱이라는 입장은 ‘우리’의 안보 의식 또한 ‘그들’과 같으므로 ‘우리’는 위협하지 않다는 점, 또는 박정근의 ‘내심’은 ‘중복’이 아니라 ‘농담’의 의도였다는 식으로 권력의 법 적용이 ‘오해’라고 해명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므로 여전히 북한 관련 발언은 ‘농담’이 아니라면 공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말하기 힘든 소재인 것이다.

법 담론은 ‘문서’나 ‘도화’만이 아닌 ‘기타 표현물’로서 트위터가 ‘이적 표현물’임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러한 ‘이적 표현물’이 트위터의 매체 특성인 ‘전파성’과 ‘공연성’을 이유로 규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해당 표현 행위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 소지하고 있는 물건, 서적 등을 통해 한 개인의 내심을 유추한다. 박정근의 사회 활동, 정당 활동, 가정에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참고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과 방식을 통해 ‘불온’한 매체로서 트위터가, ‘불온한 존재’로서 박정근이 규정되었다.

이 연구는 법적 담론이 사회 내에서 배타적 우월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분단이라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불온’에 대한 규제가 보수 정권의 중복 담론, 공안 사건의 강화와 더불어 뉴미디어에서도 여전히 정당성을 획득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신의 구속과 같은 개개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위협은 이러한 법적 규제가 표현 이후에 발생하는 ‘사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검열’의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인구가 표현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 인구를 통치하고 ‘불온’으로부터 대중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은 뉴미디어를 ‘불온’과 연관 지으며 특정한 표현을 담론의 장에서 배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다양한 방향의 검열 연구에서 확장하여 뉴미디어에서 ‘불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현재 통신 규제로 분류되는 인터넷 규제가 식민지 시기 통신 규제 제도와 권위주의 정권 시기 다양한 공안 관련 법/제도로부터 연원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불온통신’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불온’의 실제적 의미와 작동 방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한국 사회의 역사적·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불온’은 뉴미디어에서 여전히 동원되는 통치권력의 작동방식인 것이다. 이 연구가 기존의 ‘불온’ 연구를 망라하여 더욱 면밀한 ‘불온’ 개념의 재구성을 시도하지 못한 것은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현재 통신 규제로 분류되는 인터넷 규제의 역사적·제도적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탐색적 차원의 연구로서, 또한 트위터라는 뉴미디어에서 ‘불온’과 ‘불온한 존재’가 구성되는 방식을 법 담론과 미디어 담론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여전히 개인의 ‘신체’를 다루는 ‘생 정치’의 일환으로 ‘불온’이 살아 숨 쉬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 참고 문헌

- 검열연구회 (2011). <식민지 검열-제도·텍스트·실천>. 서울: 소명출판.
- 경향신문 (1960, 9, 6). 제2공화국의 지붕밑.
- 경향신문 (2012, 3, 12). [문화] 북한의 불온한 핑크 로커 통해 남한의 반복되는 문화탄압 투영
- 경향신문 (2013, 7, 18). [객석에서] 국가가 너를 갱생시키리라, 강제로
- 경향신문 (2013, 8, 24). [사설] '이적표현물 리트윗' 무죄 판결이 남긴 교훈
- 경향신문 (2013, 12, 21). [정치] 송년기획- 권리를 잃은 사람들 ③ 풍자할 권리
- 경향신문 (2017, 1, 8). [사회] 페다고지 '철학의 빈곤' 등 불온서적 낙인
- 고바야시 소메이 (2011). 한국 통신검열 체제의 기원: '제국 검열'과 식민지 조선. <아세아연구>, 54권 1호, 155-191.
- 구장률 (2009). 근대계몽기 소설과 검열제도의 상관성.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119-142쪽).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8120200>
- 권명아 (2013). <음란과 혁명: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서울: 책세상.
- 권보드래·천정환 (2012).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서울: 천년의 상상.
- 김나장·이승은·이정준·최지원 (2011). 불온서적 현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재 2010. 10. 28, 2008헌마638 결정. <법학평론>, 2권, 266-304.
- 김낙호 (2012, 10, 15). [2030잠금해제] 박정근이 칠면조다. <한겨레>, 30면.
- 김남일 (2012, 2, 24). [레드기획] 저 치밀한 농담과 장난을 처벌하라. <한겨레21>, 899호.
- 김동민 (2002). 정보사회와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5권 2호, 137-170.
- 동아일보 (2011, 8, 30). [정치] 해외 서버 사이트 검열일-북한 찬양글 급증. URL: <http://news.donga.com/3/all/20110830/39909832/1>
- 류동일 (2014). 불온시 논쟁에 나타난 문학의 존재론: 이어령의 '창조력'과 김수영의 '불온성' 개념의 함의를 중심으로. <어문학>, 124호, 285-305.
- 매일경제 (2008, 8, 1). 국방부, '불온서적' 명칭 변경 검토. URL: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73632](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73632)
- 문강형준 (2012, 11, 24). [크리틱] 어떤 유머감각. <한겨레>, 23면.
- 박가분 (2012, 10, 28). [2030잠금해제] 농담도 정도껏 하시오, 검사양반!. <한겨레>, 30면.
- 박경신 (2012, 12, 4). [기고] 패러디, 트위터 그리고 박정근. <한겨레>, 31면.
- 박선영 (2016). 1960년대 후반 코미디영화의 '명랑'과 '저속': 서영춘 코미디의 '불온함'과 검열의 문제. <한국극예술연구>, 51호, 169-201.
- 박용환 (2011, 9, 29). [오피니언] 국가보안법 빙자해 진보적 시민 탄압하나. <한겨레>.
- 백승중 (2014).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저항의 함수. <역사비평>, 107호, 399-34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브라이언 이시즈 (2009).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화검열의 체계화.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  
 구소 (편),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337-368쪽).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소래섭 (2011). <불온한 경성은 명량하라>.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 송민호 (2009). 1920년대 근대지식체계와 <개벽>.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식  
 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401-425쪽).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송민호 (2014). 일제강점기 미디어로서의 강연회의 형성과 불온한 지식의 탄생, <한국학연구>, 32호,  
 125-154.
- 안창현 (1998).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언론자유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검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제연 (2014). 1970년대 '유언비어'의 불온성. <역사문제연구>, 32호, 187-226.
- 유승진 (2015). '반공'의 감각과 불온의 정치학: 박정희 체제하의 '반공영화'를 읽는 방법론에 대한 고  
 찰(Source), <대중서사연구>, 21권 2호, 451-486.
- 이봉범 (2011). 1960년대 검열체제와 민간검열기구. <대동문화연구>, 75집, 413-478.
- 이상경 (2009). <조선출판경찰일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  
 국문학연구소 (편),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91-118쪽).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이상길 (2003). 공론장의 사회적 구성: 가브리엘 타르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1호, 5-30.
- 이준식 (2009). 일제의 영화통제정책과 민주영화협회.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285-336쪽).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이진경 (2011). <불온한 것들의 존재론: 미친한 것, 별볼일 없는 것, 인간도 아닌 것들의 가치와 의  
 미>. 서울: 휴머니스트
- 이해완 (2002). 불온통신 규제와 표현의 자유: 현재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결정. <언론과 법>, 1권, 33-72.
- 이화진 (2009). 식민지 영화검열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369-400쪽).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임유경 (2013). <1960년대 '불온'의 문화 정치와 문학의 불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사학위논문.
- 임유경 (2015). 방법으로서의 '불온'. 한국현대문화회 학술발표회자료집 (1-21쪽).
- 장우영·유일상 (2005). 사이버공간의 규준화와 인터넷 규제의 동학. <한국지역정보학회지>, 8권  
 2호, 107-135.
- 정병욱 (2013). <식민지 불온 열전: 미친 생각이 뱃속에서 나온다>. 서울: 역사비평사.
- 정병욱 (2013). 불온한 낙서, 불온한 역사: 1940년 강원도 양구군 매동심상소학교 낙서 사건. <역사비  
 평>, 103호, 233-274.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2). <정보통신윤리백서 2002>.

- 정필운 (2014). 통신영역의 규제의 정당화 논거 연구. <공법학 연구>, 15권 3호, 79-110.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1). <정보통신정책현안자료집>.
- 채호석 (2009). 검열과 문화장.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33-62쪽).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최태섭 (2012, 11, 1). [2030콘서트] 축지법과 카섹스. <경향신문>, 29면.
- 프레스리안 (2012, 2, 9). 나꼼수 엽 삭제, 뿌리는 2008년 불온서적 사건. URL: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3299>
- 황성기 (2000).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 규제. <헌법학연구>, 6권 3호, 153-207.
- 황승흠 (1999a). 인터넷과 기본권: 이른바 '불온통신'의 규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5권 2호, 23-53.
- 황승흠 (1999b). 사이버공간에 대한 형법 제243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1999.2.24. 선고98도3140 판결의 평석. <인권과 정의>, 280호, 47-58.
- 황승흠 (2001).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보와 사회>, 3호, 191-332.
- 한겨레 (1992, 8, 1). 정보윤리위 출범 심의지침 곧 제정.
- 한겨레 (1993, 11, 17). 컴퓨터통신망 일부 한때 폐쇄.
- 한겨레 (1997, 7, 15). PC통신 불온문서 게재 1개월 이상 사용정지 처분.
- 한겨레 (2008, 10, 25).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된 촛스키 "생각과 표현통제는 불행한 일".
- 한겨레 (2012, 2, 6). 다 보는 북쪽 사이트 왜 차단하나... "북 알려면 빗장 풀어야".
- 한겨레 (2012, 11, 1). [2030콘서트] 축지법과 카섹스.
- 한겨레 (2012, 11, 26). [세상읽기] '실패한 농담'까지 처벌해서야.
- 한겨레 (2013, 3, 8). 백과사전까지 만들어 감별에 집착.
- 한국일보 (2002, 11, 27). 교도소 금서목록 폐기. 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162114>
- 한기형 (2010a). "불온문서"의 창출과 식민지 출판경찰. <대동문화연구>, 72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한기형 (2010b). "법역(法域)"과 "문역(文域)"-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출판시장. <민족문화사연구>, 44권,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 한만수 (2007). 식민지 시기 근대기술(철도, 통신)과 인쇄물 검열. <한국문학연구>, 32집, 57-91쪽.
- 한상희 (2012, 6, 8). 사상표현의 자유와 중복 죄과. <'중복죄과' 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세미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홍성수 (2012, 11, 26). [세상읽기] '실패한 농담'까지 처벌해서야. <한겨레>, 31면.
- 황철증 (1999). <한국의 통신법과 정책의 이해>. 서울: 교보문고
- Amnesty International (2012).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http://amnesty.or.kr/?bcattach=b7b6f6e1b3af9ad9c97ce085cb74a2c5f15f6aa0>

小林聡明 (2010). <韓國通信檢閱體制の形成>. 一橋大學 社會學研究 博士論文.

- Agamben, G.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University Press.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 Brown, W. (1998). Freedom's silence. In R. C. Post (Ed), *Censorship and silencing: Practices of cultural regulation*. (pp. 313-327). LA: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 Burt, R. (1998). (Un)Censoring in detail: The fetish of censorship in the early modern past and the postmodern present. In R. C. Post (Ed.), *Censorship and silencing: Practices of cultural regulation*. (pp. 17-41). LA: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 Butler, J. (1997). *Excitable speech*. 유민석 (역). (2016). <혐오발언>. 서울: 알렙.
- Butler, J. (1998). Ruled out: Vocabularies of the censor. In R. C. Post (Ed), *Censorship and silencing: Practices of cultural regulation*. (pp.247-260). LA: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오생근 (역) (2003).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서울: 나남.
- Foucault, M. (1981). Questions of method. In C. Gordon et al.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심성보·유진·이규원·이승철·전의령·최영찬 (역) (2014). 미셸 푸코, 방법에 관한 질문들.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113-132쪽).
- Jonsson, S. (2005). *The Revolutioner: En Kort Historia om Folket 1789, 1889, 1989*. 양진비 (역) (2013). <대중의 역사: 세 번의 혁명 1789, 1889, 1989>. 서울: 그린비

수원지방법원 2012. 11.21. 선고, 사건번호 2012고단324

서울지법 1998. 9. 29 선고 98고단206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621-622

투고일자: 2016. 11. 30. 게재확정일자: 2017. 1. 18. 최종수정일자: 2017. 1. 24.

# The Genealogy of Rebellious Communication and Twitter

## A Discourse Analysis of the Park Jung-geun Case

**Namhee Hong**

Researcher, Yonsei 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rebellious communication’ is still being regulated in various ways even though ‘rebellious communication’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in a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2. The meaning of ‘rebellious’ has been amplified and transformed at various points through the censorship systems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US military period, and the regime of Park Jung-hee. In particular, ‘rebellious communication’ is regulated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customs’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This study analyzed discourses containing judgement about the Park Jung-geun case and the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using retweet accounts or posts related to North Korea. This study explores the genealogy of ‘rebellious communication’ based on its relationship to the characteristics of Twitter and specific individuals.

**KEYWORDS** Twitter, Rebellious Communication, SNS, Content Regulation System, Censorship